

# 개정 한신더휴 | 소유권이전등기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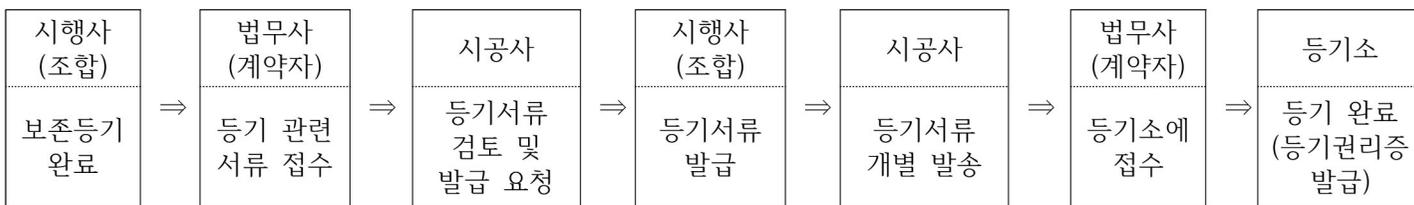
<본 안내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 한신더휴에 입주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고객님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께서 입주하신 개정 한신더휴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2022년 12월 1일 완료되어, 소유권이전등기(대출세대 근저당 설정등기 포함)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정해진 기일 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완료하시어 기간 경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1. 소유권이전등기 기한

**보존등기접수일(2022.11.21.)과 잔금납입일 중 늦은 날 기준 60일 이내**  
(기간 경과 시 최저 5% ~ 최고 30%까지 과태료 부과)

## 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1) 법무사 위임 신청 시 : 법무사를 선정하신 후, 해당 법무사에게 등기신청  
[은행 담보대출 세대는 해당 은행 지정법무사에 별도 접수 → **대출실행일 이전 사전 접수 가능**]

2) 개별등기 신청 시 : 시공사[한신공영(주)]에 서류 접수 → 시행사(조합)에서 관련 서류발급 → 시공사 수령 후  
계약자에게 송부한 이전등기서류 지참하여 등기소에 내방하여 직접 등기 신청

### ▶ 관련 서류 신청 및 접수처는 하단에 기재

1단계	법무사/계약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 한신공영(주) 마케팅부로 발송
[준비서류] ① 위임장 1부(별첨 양식 내려받은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사항 확인 및 반영하여 작성)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③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 변동사항 기재) 사본 1부 ④ 매수자 목록 사전입력 확인서 발급(시행사 정보 위임장 참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신청 발급 (등기열람/발급→법인→인감정보관리→매도용 매수자등록 입력 →확인서발급)] ( <a href="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1002010001.jsp">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1002010001.jsp</a> 참조)	

2단계	1단계 서류 접수→시행사(조합)에서 관련 서류발급→시공사 수령 후 법무사/계약자 송부
[시행사 발급서류] ① (법인인감 날인) 위임장 ②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③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④ 잔금납부확인서 ※ 관련 서류 접수 후 20~25일 소요	

3단계	등기소에 직접 등기신청(시행사 발급서류 및 추가서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1544-0773
① 시행사 발급서류 지참 ② 전매(증여)세대 추가 준비서류 - 증여(부부 공동명의 및 배우자로 명의변경 세대 : 증여계약서(검인) 원본 1부 - 제3자에게 분양권 전매세대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및 전매계약서 원본 각 1부 <b>* 등기소 방문 전 사전 문의하여 준비하실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	

▶ 접수처 및 서류발급 : 법무사 위임 및 셀프등기 동일 ◀

<b>[접수처]</b> ▷ 한신공영 마케팅부 등기 접수/발송 ☎02-3393-3320 [주소 : 서울 서초구 잠원로 94, 한신공영 4층]
<b>[법무사 대리 등기]</b> ▷ 다수건수(10건 이상) 진행에 따른 접수는 한신공영 마케팅부로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b>[서류발급]</b> 신청자(법무사/계약자)에게 직접 등기발송 함

### 3.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는 수분양자가 분양받으신 주택에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정한 표시에 의해 널리 알리는 공시방법으로 법원에 등기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분양자는 위 등기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일 이 기간내에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그 당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과표의 1%)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기간 경과로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본인의 책임이므로 개별등기 혹은 법무사 지정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 완납(아파트 및 유상옵션계약) 및 중도금 대출 상환 완료 세대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함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서류는 시행사(조합)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부동산 매도용 및 등기필 정보를 발급받아 교부하므로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 기한(60일) 내에 여유롭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문의 사항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1544-0773  
 한신공영 마케팅부 ☎02-3393-3320

\* 담보대출을 받을 세대는 본 아파트의 근저당설정 등기시까지 해당 은행 지정법무사를 통해 추가서류 확인 후 소유권이전서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